
2023년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생 모집 공고문 (고등학생 전형) ~3/13

1. 2023년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소개

-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이 다양한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갖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본 사업은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의 재산 사회 환원의 약속(더 기빙 플레지)에 따라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100억 원의 성금으로 사단법인 점프에서 진행합니다.
-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구분	지원성격	인원	장학금액 (연간)	비고
고등학생	성장 지원	000명	300만원	학기 별 150만원

- ※ 장학생 선발 후에는 학업 및 장학금 사용 계획/보고 등 장학금을 통한 '성장 기록'을 작성
- ※ 더 많은 분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장학금의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2. 장학생 선발개요

1) 선발개요

- 선발대상**
 - ①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130% 이하)
 - ② 1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부친 또는 모친)의 고등학생 자녀 (23년 2월 27일 기준)
 - ③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 ①~③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2차 장학금 지원 시(8월) 최초 신청할 당시 지원자격이 유지되어 있어야 함

- 신청 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 2023년 3월 13일(월)까지
- 선발 인원 : 고등학생 전형 000명
- 지원 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학기기준 2학기)
- 지원 내용 : 장학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장학금 2회 분할지급, 4월 / 8월)
 - ※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고등학생 장학생과 부모님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2) 신청자격

- 신청 자격: 아래 표의 '가~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상세내용
가	가정 내 경제 상황	소득 기준이 A-C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A. 기초생활수급자 B. 차상위계층 C. 중위소득 130% 이하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해당되는 자격 중 가장 우선순위의 서류 제출 필요 ※ 참고 : (중위소득 130%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나	외식업주 자녀	신청일 기준 부모가(부친 또는 모친) 외식업주이며, 개업일이 1년 이상 된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고등학생 ●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가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점 4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단, 사업자등록증 내 '종목'중 1) 일반 유흥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제외 ● 개업일은 현재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개업일 기준 ● 폐업을 하고 다시 운영을 할 경우, 이전 운영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주 양육자가 외식업주인 조부모(조손가정)일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시 자격인정
다	학적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 2023년 1학기 ~ 2023년 2학기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고1·2·3 학생

※ 기준자료. (중위소득 130%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고시번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 고 시 자 : 보건복지부장관
- 근거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

■ 기준 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02,000	96,150	28,896	97,102
2인	4,494,000	159,423	122,890	161,135
3인	5,766,000	206,304	167,633	209,382
4인	7,022,000	250,789	223,186	255,791
5인	8,230,000	291,898	273,699	299,947
6인	9,397,000	346,067	335,569	359,887
7인	10,540,000	379,133	375,956	403,785
8인	11,684,000	434,962	436,179	476,875
9인	12,827,000	476,875	481,248	521,613
10인	13,970,000	521,613	527,523	563,270

※ 가구원(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나와있는 피부양자(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단위 : 원
- 2022.8~2023.1월 건강보험료 납부자 평균 고지 금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함.
- 혼합 : 가구 내 납부자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유형 혼합되어 있는 경우임.

3)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홈페이지 (woowa.janghak.org) 내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파일 업로드)
 - 자기소개서 문항과 제출서류는 아래 [4]제출서류] 확인

4) 제출서류

가. 온라인 신청서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문항 *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접수

자기소개서 문항 (신청서 내)	
문항1 * 공백제외 300자 이내	'좋아하는 콘텐츠(노래, 영화, 책, 웹툰 등)를 중심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문항2 * 공백제외 500자 이내	장학금을 신청한 동기와, 장학금을 받으면 '나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 지 이야기해 주세요.
문항3 * 공백제외 500자 이내	우리 부모님의 가게(외식업장)를 자유롭게 자랑해주세요.

나. 제출 서류 * 서류 제출 관련 하단 [4. 유의사항] 참고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의 스캔파일(PDF)을 사본으로 인정, 홈페이지 지원 시 첨부 필수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설정 발급하며, 뒷자리가 포함되는 경우 삭제 후(수정테이프 등) 제출 * 증명서류는 모집 시작일(23년 2월 27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확인	
학적 증명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사본
외식업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 모집 시작일 기준 1년(365일)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가구구성 확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이혼·재혼가정의 경우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가정 경제상황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인 본인이름으로 발급 요망 ※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법정 차상위계층 (서류 ①~⑥ 중 택1)	[본인]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①~⑥ 중 택1 ① 한부모가정 증명서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⑤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본인이름으로 발급 요망 ※ ①~⑤는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중위소득 130% 이하	중위소득 구간 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관련 신청서 작성은 공고문 하단 [별표2] 참고 ① (가구 내 납부자 모두 / 기간 : 22년 8월~1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인원 모두 포함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발급기간: 23. 02. 27 기준 1개월 이내) * 가구원 수 기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의 등록인원 수로 인정 * 가구 내 납부자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 이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 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본인을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인원으로 인정 * 재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 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재혼상대자 및 본인을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록인원으로 인정

5) 선발 일정 및 기준

● 선발기준

- 1차 적격심사 (정량평가 : 경제상황)
- 2차 서류심사 (정성평가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동점자 처리 기준 : 외식업 운영기간

● 선발 단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장학생 신청	»	1차 적격 심사 (지원기준 적격심사)	»	2차 서류 심사 (장학생 선정위원회)	»	선정결과 발표

● 선발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기간	2023. 2. 27 (월) ~ 3. 13 (월)	
최종 결과발표	2023. 4. 7 (금)	개별 안내
장학금 수여식	2023. 4월 중 진행 예정	장학생 참석 필수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자격 및 전형 별 제출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시 가급적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 (IE는 버전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
- 필수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하며 여러 파일은 업로드 항목당 한 파일(PDF, ZIP)로 병합하여 제출
 - ※ 파일 업로드가 어려운 경우, 메일 제출하되,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파일(zip파일 등)로 압축하여 woowa@janghak.org 로 제출
 - ※ 제출시 메일제목은 "[전형/서류제출]신청자 성함_생년월일"으로

예시) [고등학생/서류제출]김장학_051230

메일 내용에는 신청자 본인의 홈페이지 이메일 아이디를 함께 기록.

- ※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접수 완료
-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접수 완료,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서 수정 불가
- 지원 시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설정으로 발급하며, 뒷자리가 포함되는 경우 삭제 후(수정테이프 등) 제출
- 증명서류는 모집시작일(23. 2. 27)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게 확인
- 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필요시 사무국에서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운영사무국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

● 기타 안내사항

- 장학생 선발결과는 개별 메일 및 문자로 안내 예정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추후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 필수
- 장학생으로 미 선발 신청인의 제출서류 및 정보 일체는 수집 목적 달성 시 일괄 삭제

4. 장학금 지급 및 사용 규정

● 장학금 지급 결정의 취소·환수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신청서 내용, 증명서류)
- 학교로부터 징계(정학, 제적, 퇴학 등) 처분을 받는 등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 학적 변동사항(휴학 등)이 발생할 경우
- 민/형사상 구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운영사무국

(사)점프 | T. 02-2088-2127, 02-2135-8387 E. woowa@janghak.org

사무국 운영 시간 : 월~금 10:00 ~ 18: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30~13:30)

※ 접수기간에는 문의가 많아 가급적 카카오톡 채널(@woowa_janghak) 혹은 이메일 문의를 활용하여 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이 느릴 수 있으므로 조기 접수요망

[별표] 온라인 신청서 [건강보험료] 항목 입력 가이드

작성항목	내용
가구원 수	가구 내 납부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등록인원의 합 - 가구 내 납부자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본인 포함) - 본인이 장기 국외체류자로, 건강보험료 면제 및 경감 대상의 경우 본인 제외 - 이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본인(및 배우자)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으로 인정 - 재혼가정의 경우, 서류증빙 완료시 주양육자 부친 또는 모친과 재혼상대자 및 본인(및 배우자)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인원으로 인정
구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 내 납부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입력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납부할 경우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혼합 : 가구 내 납부자 중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6개월 사이 구분에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23년 1월) 기준으로 작성
납부자 번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 입력 납부자번호 11자리를 입력
월별 고지금액 * 22년 8월 ~ 23년1월, 6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 [건강보험료] 열에서 해당하는 달의 금액을 각각 입력 - 월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만 작성 6개월 중 일부만 납부하였고, 일부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달은 0원으로 작성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3. 02. 27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기간을 설정해 발급 (기간 : 22년 8월 ~ 23년 1월 (6개월))